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78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차지호·박희승·채현일
이해식·임호선·윤종균
황명선·신정훈·안호영
김현정·정을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폭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탄소예산 산출, 적응정책 자문 등을 담당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균형잡힌 기후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

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기술개발·역량강화’를 명시함으로써 기후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과 균형잡힌 자원 투입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70조제3호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① 고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적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대기, 해양, 물, 빙권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

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국제법, 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제도·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
직하고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연
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 부문별 위원을 복수로 두고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 중 14명의 임기를 2년으로 한
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
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
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회”로, “심의·의결”은 “직무
수행”으로 본다.

⑤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과학위원회가 작성하는 의견 및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
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2(기후과학위원회) ① 고</u> <u>도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하여</u> <u>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u> <u>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u> <u>성,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적응</u> <u>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u> <u>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통령</u> <u>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둔</u> <u>다.</u> <u>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을</u> <u>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u> <u>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다음 각</u> <u>호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사람</u> <u>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최우선</u> <u>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u> <u>1. 대기, 해양, 물, 빙권 등 기후</u> <u>변화에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u> <u>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u> <u>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u> <u>는 자</u> <u>2. 에너지, 산업 공정 등 온실가</u> <u>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된 공</u> <u>학, 경제학 등 분야에서 박사</u> <u>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u>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된 사회과학, 보건, 생태, 식량, 방재, 데이터과학 등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국제법, 정책 등 기후변화 및 적응과 관련된 입법·제도·국제적 규범체계와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 부문별 위원을 복수로 두고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 중 14명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청취, 사무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후과학위원회”로, “심의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의결”은 “직무수행”으로 본다. ⑤ 기후과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업무로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후과학위원회의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과학위원회가 작성하는 의견 및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기금의 용도) ----- ----- -----.
---	--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u>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u> <u>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u> <u>강화</u>
<u>3. ~ 11.</u> (생략)	<u>4. ~ 12.</u> (현행 제3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